행복나눔이 지원

세부사업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u>l</u>)	1,502	
사업목적	○ 농촌 지역 . 기초적인 가장	고령·취약 가· 정생활 유지 5		¦나눔이(기	존 '가사도	.우미')를	지원하여
사업 주요내용	○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서비스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지원한도	○ 1가구당 국고지원한도 : 10,500원/일						
재원구성 (%)	국고 70	%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7년	2018년		019년	2020)년
재정투입	합계	1,910	1,910		2,310	2,14	
현황	국 고 자부담	1,337 573	1,337 573		1,617 693	1,50	
	7176	373	373		033	04	-
담당	당기관	담딩	과	담당	자	연락	∤ 처
농림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044-201-1574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공헌부	팀장 이명순02-2080-54과장 이유경02-2080-54주임왕02-2080-54		0-5412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험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제지주
관련자료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표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 O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O 행복나눔이 : 국고 70%(10,500원/회), 농협부담 30%(4,5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 나눔이(자워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 단 경로당은 행복나눔이 전체 예산의 50%이내에서 사용
 -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가구의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행복나눔이 1일 최대 3명 이하로 지원 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도우미 신청 절차

- O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 청가구와 파견될 행복나눔이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행복나눔 이는 상호 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 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 및 지도
 -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선정

-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 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행복나눔이로 선정
- · 신청가구가 행복나눔이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다문화 생활상담을 수행하는 행복나눔이는 국내이주 5년 이상인 결혼이민여성을 우선 선정
 -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행복나눔이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행복 나눔이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 지역농협은 다문화 행복나눔이의 생활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농협중앙회는 행복나눔이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행복나눔이의 가사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 행복나눔이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한 행복나눔이는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 활동비 신청은 분기별 한번에 신청 가능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 하여 행복나눔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행복나눔이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 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지역농협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행복나눔이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 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 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 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행복나눔이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행복나눔이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행복나눔이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행복나눔이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 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 《제재》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행복나눔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 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1 1			핸드폰	
	사고·질병			사고질병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داند	발생일/ 교육참석일			내용/ 교육내용	기타사고, 질병 [교육
영농				<u> </u>	[]
도우미 신청인	신청사유				
기재사항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행복 나눔이	신청사유			희생내스	
신청인	신청일수			희망시기	
기재사항 도우미))l			11. 1.01.01	
내 역 (본인추	성 명			생년월일	
천시 신청인	주 소			도위기선정	
기재)	· 			통보일시	
_		··행복나눔이를 신청		1취리터 기스	나시키기 기퍼리시
		재정사업관리 기본 기관이 본인의 아래			
		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 0 - 1 H 1 - 1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인 성	명	(인/서명)
		신:	청대리인 성	명	(인/서명)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필수전 정보]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지현황,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수집·이용할 항목	○ 기타 영농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기계 이 5 현 3 학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11 () (A) () (3) (3)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보유·이용 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동의 거부 권리 및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부동의시 불이익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여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할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기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원봉사자) 수혜자	주소		전화번호		
	수혜자 성 명		생년월일		
(도움받은 자)	수혜자 주 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활동시	· 항》		
활동일/	자 및 시간	활동내용		수혜자	확인(인/서명)
	المحالم المحالم	급 액:	원 의\하도	이스/	OI)
활동비	※ 산물내 입금은행명	역 : 1일 활동비 (원) × 활동일수(예금주		일)
신 청			71111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자원봉사자) 성명 : (인/서명)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행복나눔이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지	}	성명 :		(인/서명)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영농도우미 □, 행복나눔이 □)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경로당)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예시7> 결혼이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인 파견 <예시8> 파종, 전지, 수확시기 등으로 작업량 과다			
확 인 자		일 (인/서명) 책임자 중	1인)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다수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